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건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수취인불명,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)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【송달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9월 9일

김 제 시 장



1. 처분제목 :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 통지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2. 처분근거 : 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
3. 처분대상 : “공시송달 별첨 내역서 참조”
4. 공고기간 : 2024. 9. 9. ~ 2024. 9. 23.(15일간)
5. 공고 및 게시장소 :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6. 기타사항 : 만일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『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』 제1항에 의거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제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 (<http://jb.simpan.go.kr/spi>)으로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공고대상

허가(신고)번호	대지위치	만료일자	건축주명	건축주 주소	공시송달 사유
2022-건축과-신축허가-77	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00	2024.11.01.	김한○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3길 00-0	주소불명

※ 별첨 :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 통지 사본1부. 끝.